

## 제32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1 차)

1. 일 자 : 1954(4287)년 11월 16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

1) 참석의원 : 21명

박찬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김경현,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이소규, 김창현, 손백수

2) 불참의원 : 무

4. 개 회 식 :

- 1) 개 회 사
- 2) 국민의례
- 3) 의장인사
- 4) 폐 식 사

5. 개회선언 : 의장  
20분)

(오전 10시

6. 보고사항 :

※ 제31회 의회 회의록 보고의 건

◇ 박찬대 서기

- 전차 회의록을 낭독

※ 내무위원회 회의상황의 건(각시 과세실태 상황)

◇ 김영완 의원

- 광주사세청 관하 각시(광주, 전주, 군산, 목포) 과세를 비롯한 10여종목에 선한 실태조사 결과를 별지 대조표에 의하여 상세한 보고가 약 50분간 있었음

(내용 생략)

※ 제목간 전속 연락선 배치에 관한 건의문 발송의 건

◇ 박찬대 서기

- 동건에 대한 건의문 낭독함과 동시 관계 당국에 발송한 경위를 설명

※ 비료공장 설치 대책위원회 격려문 발송의 건

◇ 박찬대 서기

- 동건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함과 동시 발송한 경위를 설명

※ 월동 연료 반입 상황 보고의 건

◇ 김창현 의원

- 동건에 대한 반입 교섭 결과를 약 10분간 설명

(내용 생략 속기록 참조)

◇ 휴회선언

- 의장

(오전 12시 35분)

◇ 속회선언

- 의장

(오후 1시 40분)

◇ 의장

- 용당동에서 진정사가 제출되어 왔으니 서기로부터 낭독케 하겠음

◇ 박찬대 서기

- 별지 진정서를 낭독

◇ 김남진 의원

- 소개의원 3명이라야 되는데 2면밖에 안되니 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서류가 아니다.

◇ 김삼성 의원

-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가해서 상정하기 바람

※ 소개의원 3명으로 정식 수리되었음

◇ 김남진 의원

- 합법적인 진정 서류로서 수리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수도 시정을 시장 으로부터 들어보자.

◇ 손백수 의원

- 본 정서에 대하여는 4, 5일전 시장과 건설과장을 만나서 절충하였던 바 분중에서 중지 승락만 있으면 하겠다는 말이 있기에 본 의원이 문태중학교 에 가서 교섭한 결과 이제사 중지 승락을 받았다.

◇ 하동현 시장

- 기술자로부터 조사시켜 예산 범위내에서 동민의 음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7. 부의안건 :

※ 개헌안 조속 통과 진정의 건

◇ 진복춘 의원

-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여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대략 말씀 드리자면 헌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과거 이조말엽 이완용이란 매국노인 역적이 있는가하면 이준열사와 같

은 국권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할복 자살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격이 되고 말았다.

이번 개헌안의 골자는 국민주권의 토대를 견고히 하자는데 근본이념이 있는 것이니 하루속히 통과 되도록 국회의장 및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내자 동의

(재청)

◇ 이복주 의원

- 이 문제는 국내 사정에 비추어 볼 때나 또는 갑자기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개헌할 필요가 있는 이 문제는 정당을 가리워 당파적면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건의문에 있어서는 각 지방에서 하루에 몇 백 몇 천 통씩 들어오니 각 의원도 빨리 통과해 달라는 극회의장도 있었으며, 특히 대한민국 몇제 되지 않는 우리 목포에서 이제사 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는 이러한 긴급안건이 있으면 간사나 의장께서 의원들과 논의하여 조속한 대책을 세우는데 유의해 주기바라며, 오늘 개헌안 조속 통과토록 건의문을 발송하자는 동의에 찬성한다.

◇ 김길한 의원

- 목포시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당시 출신 정중섭의원에게도 격려문을 보내기로 동의에 첨가

◇ 김경현 의원

- 의장에게만 내면 전 의원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이니 정의원에게는 보내지 말자 개의

※ 재청이 없어 폐기

◇ 이문길 의원

- 개헌안의 골자를 모르니 골자를 말씀해 주기 바람

◇ 정응표 의원

- 시의원으로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개헌안의 골자를 모른다는 것은 시의원의 위신 문제이며, 또한 행정부에 설명을 듣자한 것도 모순이다.

이 진정안은 시의원 수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자의 설명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정치문제인 것을 행정부에 듣는다는 것은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의원이나 타의원의 충분한 숙여으로 잘 알줄 아니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

(재청)

◇ 의장

- 토론 종결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8명중 가 16, 부 2

가결

◇ 의장

- 개헌안 조속 통과건의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8명중 가 15

가결

※ 오후 2시 40분 이재홍, 임일남 의원 참석

※ 제5회 시정감사 실시의 건

◇ 김남진 의원

- 금반 시정감사 실시할 것을 오늘 일자로 행정부에 통고할 것이며, 반편성은 다음 의회에서 하자 동의

(재청)

◇ 명남철 의원

-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도민중 갱신사무로 동사무가 복잡할 것 같으니 12월 1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 하동현 시장

- 현재 시의 형편은 1954(4287)년도 제3기분 영업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있고 또는 추곡수납이라던과 국채 소화사무가 재차 도에서 통첩이 와 있으니 감사실시하는데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이소규 의원

- 치법에 연 2회 이상 할 수 있으니 집행부의 사정만 듣고 천년 시킬것이 아니라 내 1일부터 15일까지 할 것과 반은 종전대로 4반을 편성할 것을 동의에 참가

※ 동의자 수락

◇ 의장

- 도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9명중 가 14  
가결

※ 1954(4287)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추가개정 예산의 건(제3회)

◇ 이제국 총무과장

- 별지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부터 설명이 있었음

※ 시영식당 임대료 및 토목비 보조, 단체 보조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음

◇ 이복주 의원

- 번영회가 시청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가?

◇ 하동현 시장

- 아니다.

◇ 이복주 의원

- 번영회의 부채를 위해서 단체 보조비로서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가?

◇ 하동현 시장

- 내무위원회에 일임해서 결정했다는 서면이 왔기에 보조하는 형식으로 한 것이다.

◇ 김남진 의원

-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 일임했던 것을 이번 나온것은 사후승인한 것이요.

논의하려면 3분지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이재홍 의원

- 번영회 자체의 부채인가? 시의 부채인가? 회의록을 낭독해 주기 바람

◇ 김영완 의원

- 회의록에도 확실히 일임키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단체보조비로 하느냐? 잡비로 하느냐? 가 문제일 것이다.

◇ 이소규 의원

- 부채 30만환의 내용에 대하여 그 용처의 내용이 여하한가?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해 주기 바람

◇ 김영완 의원

- 용처는 건설적 면에서 써 가지고 있다.

◇ 이재홍 의원

- 부채 30만환을 번영회에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요.

명백히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권을 내무위원회에 일임한 것이 아닐 내용을 보고해서 숫자 파악에 불과했다고 보니 공개석상에서 명백히 하자

◇ 이소규 의원

- 번영회에 운영권을 준 것은 이익을 가지고 시 번영을 위해서 써 달라고 운영권을 맡겨 주었지 부채를 말하는 것은 논의상 있을 수 없으나 그 당시

공개석상에서 논의 하기는 이 문제에 의원이 끼어있으니 비밀회의에서 하자는 것이었으며, 김팔용의원이 수백만원 이익을 먹은 것도 아니고 23만환을 17개월 동안 켜 것에 불과하니 17개월 동안 23만환을 나누어 보았자 1개월 만여환 밖에 안되며, 이것을 김팔용의원과 같이 나누어 먹은 것도 아닐 것이며, 이 정도는 사회 통상면에서 용납할 수 있는 문제이니 동목포역 건철비에 쓴 것 같이 하라고 의론 했었다.

◇ 이재홍 의원

- 시변영을 위해서 쓴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풍문에 의하면 김팔용의원이 기와집을 샀네하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명백히 해서 뒷처리를 잘 하자는 것이다.

◇ 이복주 의원

- 30만환의 부채 내용을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할 것과 단체 보조비로 하지 말고 다른 합법적인 정당한 면에서 서면으로 꾸밀 것을 조건부로 할 것을 개의  
(재청)

◇ 하동현 시장

- 용처가 확실하니 할 수 있는 문제이나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 복잡한 일이고 여기에는 은행 대 관계서류밖에 없으니 허위문서 밖에 작성이 안된다.

만일 그렇게 하라하면 연구하겠으나 단체 보조비로 나간 것에 대하여는 회계법상 위헌은 아니다.

◇ 이소규 의원

- 응당 의원이나 의원의 말대로 하는 것이 나도 동감이나 그렇게 하면 허위문서를 꾸며야 된다는 시장의 말도 있으니 지출방법과 서류 작성은 저당한 항목으로서 서류를 꾸며서 하기로 시장에게 일임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수정 동의  
(재청)

◇ 김남진 의원

-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 집과 개의 집이 골자를 먼저 규명해야 된다.

차이가 없는 것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 이소규 의원

- 의원의 개이가 오늘 통과하고 내무위원회에 결정한 내용을 다음 의회에서 보고한다면 내 동의는 취소하겠다.

※ 이복주 의원 개이가 동의가 됨

◇ 이재홍 의원

- 예비비 30만환은 항목이 애매하니 예비비 그대로 두고 사실대로 항목을 해서 제4회 추가경정 때 계산하기로 하고 통과 하자 개의

(재청)

◇ 의장

- 개의안불너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8명중 가 2

부결

◇ 의장

- 동의안에 가부를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8명중 가 2

부결

※ 재차 개의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였으나 동일함

◇ 이재홍 의원

- 동의와 개이가 폐기될 때에는 원안을 다시 표결해야 되니 원안 표결해 주기 바람

(규칙)

◇ 의장

- 원안 통과에 대하여 표결 하겠음  
재석의원 18명중 가 12  
가결

※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 이제국 총무과장

- 별첨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이 있었음

◇ 김경현 의원

-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진복춘 의원

- 부속물이 많이 있으나 내일이라도 공고해서 매각처분 하도록 하자 동의  
에 참가

※ 동의집 수락

◇ 하동현 시장

- 2대의 화물 자동차를 팔아서 심품 1대를 사되 만일 초과하면 그만 두겠  
다.

◇ 명남철 의원

- 차이가 있으면 그만 두겠다는 시장의 말이 있으나 현재 차로서는 건설  
과의 사업을 못하니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도록 하자 동의에 참가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8명중 가 18

## 가결

※ 전차 회의시 의원측 질의에 대한 시장 답변의 건

### ◇ 하동현 시장

- 전차 의회 회원측 질의의 위임사무 부진의 건 외 11건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

※ 내용 생략 시장 답변한 12건명 아래와 같음

1. 위임사무의 부진의 건
2. 임시직원 채용에 대하여 의원 추천이 아니면 안된다는 점
3. 인회 조치가 안되었으니 인사 이동이 있다는 점
4. 기술진에서 접대를 받고 집무한다는 점
5. 용당매축문 문어진 돌 치어놓지 않는 점
6. 해수욕장 운영 불합리한 점
7. 수도요금 과징의 건
8. 의회 일자를 명절로 정한 점
9. 죽교 4구동장 사건의 건
10. 국채사건 관련자 조치의 건
11. 국채소화 대금 착복의 건

### ◇ 김영완 의원

1. 광주에서는 노무동원자 세대에 대하여 호별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목포는 할 수 없는가?
2. 교육세 고지서 문제인데 시장인이 찍혀진 것과 교육감 인이 찍혀진 것이 있으며
3. 전당포 문제인데 광주는 벌써 개업하고 있는데 세민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면에서 시당국에서 추천하고 있는가?
4. 가축 금지 구역에도 장려하는 면에서 위생상 지장이 없으면 용인하도록 서장과 상의해서 할 수 없는가?

◇ 하동현 시장

- 김영완 의원 질의 1, 2, 3, 4에 대한 답변 여하
  1.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2.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3. 필요한 용지를 만들고 있으니 불원 개업 하겠다.
  4. 서장과 상의해서 위생에 지장이 없는 한 장려토록 하겠다.

◇ 의장

- 회의록 서명에 명남철, 진복춘 의원을 지명

◇ 산회선언 : 의장

(오후 5시 2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4(4287)년 11월 16일

의장 : 박찬규

의원 : 명남철

” : 진복춘

작성자 서기 : 천세봉

## 제32차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2 차)

1. 일 자 : 1954(4287)년 12월 1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 : 18명

박찬규,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김경현,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이소규, 김창현, 손백수

2) 불참의원 : 3명

문택호, 이문길, 이복주

4. 개의선언 : 의장

(오전 10시 20분)

5. 보고사항 :

※ 제32회 제1차 회의록 보고의 건

◇ 박찬대 서기

- 전차 회의록의 낭독이 있었음

◇ 의장

-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면 통과 하겠음

※ 중앙 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이춘흠 건설과장

- 당면한 당시 건설사업 문제에 대한 교섭 결과를 중앙에 출장한 건설과장으로부터 약 10여분간에 걸친 보고가 있었음

(내용 생략)

※ 의장 형편에 의하여 부의장과 사회를 교체하였음

6. 부의안건 :

※ 목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의 건

◇ 이제국 총무과장

-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요지 : 첫째, 물가지수에 의하고,  
둘째, 원을 환으로 정정하고,  
셋째, 도에의 준칙에 의함)

◇ 김경현 의원

- 본 안건은 전도적일 것 같으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없으므로 폐기

※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완, 임일남, 의원으로부터 질의와 집행부의 응답이 약 25분간 있었음

(내용 생략)

(질의요지 : 김영완 의원으로부터 4배나 인상함으로서 예산상 수지면의 바란스도 알지 못한 추상적인 것이요. 임일남 의원으로부터 도의 준칙이라 하여 목포시에 맞지 않는 무조건 인상은 모순된 처사라 하며, 정응표 의원으로부터 증액으로 인하여 수입된 금액에 대한 용처의 계획이 사전에 없다는 것과 예산상 변동이 생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지면에 명세서가 첨가 되도록 과거 의회시 4, 5차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조건부로 해준 것을 불이행 했다는 점을 각각 지적하였음)

(속기록 참조)

◇ 김창현 의원

- 과거의 약속을 이행치 않는데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증액으로 인한 수입된 금액의 용처는 다음 의회에 명시할 것을 조건부로 것을 동의

(재청)

◇ 김영완 의원

- 구체적인 수지면의 명세서가 제시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개의

(재청)

◇ 김삼성 의원

- 앞으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에 첨가

◇ 임일남 의원

- 구체적인 명세서가 제시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개의안에 찬성

◇ 진복춘 의원

- 목포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반액으로 인상할 것을 동의에 첨가

◇ 김삼성 의원

- 토론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

(재청)

전원 찬성

◇ 부의장

- 개의안부터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6명중 가3

부결

◇ 부의장

-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6명중 가 10

가결

※ 제5회 시정감사반 편성의 건

1. 반 수 : 4반
2. 매반원수 : 5명씩
3. 편성방법 : 각 의원 지원에 의하여 각 반편성

반 명	감 사 반 원	보 조 원
총 지 회	박찬규 의장	박찬대
1반	김팔용, 김경희, 진복춘, 김남진, 임일남	차동수
2반	김경현, 김삼성, 손백수, 이재홍, 정응표	천세봉
3반	문택호, 이문길, 김영완, 이소규, 이복주	김기채
4반	오세일, 김창현, 명남철, 김길환, 김자홍	이재성

◇ 부의장

- 회의록 서명에 김창현, 김영완 의원을 지명

7. 산회선언 : 부의장

(오후 1시 1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4(4287)년 12월 1일

부의장 : 이소규

의원 : 김영완

작성자 서기 : 천세봉

## 제32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3 차)

(오 전)

1. 일 자 : 1954(4287)년 12월 23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 : 14명

박찬규, 이복주, 명남철,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이소규, 김창현, 손백수

2) 불참의원 : 7명

김삼성, 김경현,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4. 개의선언 : 의장

(오전 10시 35분)

5. 보고사항 :

※ 제32회 제2차 회의록 보고의 건

◇ 박찬대 서기

-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였음

◇ 회의록에 이의 없으므로 통과 하겠음

※ 진정서 제출의 건(어련 위판권을 위요한 진정의 건)

◇ 박찬대 서기

- 진정서 원안을 낭독

◇ 진복춘 의원

- 어업조합과 어련판매소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어업조합에 자금이 없어서 판매권은 어련에다 준 것이나 그동안 업자에 대한 어련의 부당이득의 착취가 허다하다 하니 어련위판소에서 기지고 있는 자금과 판매권을 어업조합에 넘겨 주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하자 동의

◇ 이소규 의원

-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어업조합에 넘길 수 있다면 하도록 찬성하되 어조에서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실정을 알기 위하여 진 의원 외 2, 3명으로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가능하다면 건의토록 하자

◇ 이재홍 의원

- 조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어업조합장인 진 의원은 이 문제에 관계하지 않도록 할 것과 지명권은 의장에게 일임해서 선정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 의장

- 조사위원에 이소규, 이재홍, 명남철 의원을 지명 선정

※ 제대장병 보도회 진정서 제출의 건

◇ 박찬대 서기

- 진정서 전문 낭독

◇ 이소규 의원

- 아무리 제대장병이라 하지만 부정이 있으면 해고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군경원호회비는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피원호자인 상이장병이나 유가족에 원호하는 것이니 수시 사업의 운영상황을 시민이나 피원호자에게 공개해 줄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반 시정 감사시에는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 당시에는 서류도 없이 도에나 올라다니며 감사를 안받을 공작이나 하고 돌아다니 처사에 대하여는 아무리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

보아도 의아스러운 일이며, 시민이 피원호단체에서도 당시 분회의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알고져 원하고 있으니 본회의 유지 육성을 위하는 의미에서 피원호단체에서 제출한 진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 병사구사령관, 경찰국장에게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의 감사를 받도록 하자 동의

(재청)

◇ 김남진 의원

- 당시 분회의 운영면을 보건데 쥐꼬리만한 회비를 가지고 30여의 직원이 먹고 있으며, 이들 직원 가운데는 피원호자인 상이제대 장병이 한사람도 채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사나 직원은 큰 회사의 전무격인 봉급 지급을 하고 있는 모순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건의문 내용에 이러한 모순된 운영 제도를 고쳐서 잘 운영 되도록 삽입할 것을 부의장의 동의에 첨가

◇ 손백수 의원

- 건의문 작성은 감사반과 행정부가 상의해서 할 것을 동의에 첨가  
(수락)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4명중  
전원 가결

◇ 김남진 의원

- 각 공장에서 도정하는 양계, 양돈용 사료인 부산물의 취급에 대하여 현재 각 시군면으로 분산 도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집단도정을 할 때의 취급 제도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모순된 제도를 시정해서 당시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목포에서 사용토록 시의회의 결의로서 도지사에게 건의하자 동의

(재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4명중

전원 가결

◇ 휴회선언 : 의장 (오후 1시)

◇ 속회선언 : 의장 (오후 1시 35분)

◇ 김남진 의원

- 오늘 회의는 이대로 종료하고 명일은 연동시장 개장식도 있고 하니 24일부터 속회할 것을 동의  
(재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4명중 가 8  
가결

◇ 산회선언 : 의장 (오후 1시 40분)

## 제32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4 차)

(오 전)

1. 일 자 : 1954(4287)년 12월 24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

1) 참석의원 : 13명

박찬규, 명남철, 김삼성,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이소규, 김창현, 손백수

2) 불참의원 : 8무

이복주, 김남진, 김경현,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4. 개회선언 : 의장

(오전 11시 5분)

5. 토의사항 :

※ 1954(4287)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수도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경정예산의 건

◇ 김삼성 의원

-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한 결과 차기 의회에 상정한 것을 동의

(재청)

◇ 진복춘 의원

- 본 안건은 4, 5일 전에 배부해서 충분히 검토도 했을 것이고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니 이 자리에서 심의할 것을 개의

(재청)

◇ 의장

- 개의부터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1명중 가 4  
부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1명중 가 3  
부결

◇ 의장

- 양안 부결로 의사 일정대로 심의하겠음

◇ 이제국 총무과장

-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예산심의 개시(주로 세입면의 병원 수입에 대하여 의원측과 집행부간에 질의응답이 약1시간 15분간 있었음  
(내용 생략)

◇ 하동현 시장

- 병원 수입의 추가예산은 약간 인상에 수반한 자연 증가에 인한 것이며, 본 예산을 추가 편성시에 원장과 서무과장을 불러 놓고 세입에 대하여 다짐을 받고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그러나 만약 세입이 부지할 시는 세출을 억제하겠다.

◇ 김창현 의원

- 도민중 갱신 사무비 보조하는 의미에서 각 동에 천환씩 주게 되어 있으나 이는 극소수하니 여비에서 감해서라도 천환씩 더 증가해서 주면 쓰겠다.

◇ 하동현 시장

- 고려 하겠다.

◇ 의장 : 휴회선언

(오전 12시 30분)

(오 후)

◇ 의장 : 속회선언

(오후 1시 30분)

◇ 김창현 의원

- 1954(4287)년도 일반회계 추가예산안은 정식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것을 번안 동의

(4청)

◇ 진복춘 의원

- 시립병원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적자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  
의 건강을 보전하여야 되니 이 점을 이해하시고 1954(4287)년도 목포시 일  
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

(재청)

◇ 의장

- 개의안부터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3명중 가 7  
가결

※ 1954(4287)년도 목포시 수특회계 세입세출 개정예산안의 건

◇ 손백수 의원

- 본 개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3명중 가 13  
가결

※ 목포시 공인 전당포조례 제정의 건

◇ 진복춘 의원

- 제2, 3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2명중 가 12  
가결

※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세 징수수당 지급조례의 건

◇ 손백수 의원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1명중 가 11  
가결

※ 제5회 시정감사 보고의 건

※ 의원으로불처 별지 감사 보고서와 여히 각각 보고가 약 1시간 20분동안 있었음

◇ 진복춘 의원

- 이충무공 동상 건립에 있어서는 광주나 여수에서는 맹렬히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 목포는 해군기지가 있고 또는 충무공의 전적인 고향이 있고 하여 목포는 충무공 동상 건립의 최적지인 것이니 시의회가 주동이 되어 목포에 건립 되도록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도지사(추진위원장), 도의회, 출신구 의원에게 건의할 것을 긴급 동의

(3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1명중 가 11  
가결

◇ 의장

-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총평이 별지(의장 총평 참조)와 여히 약 15분간  
있었음  
(내용 생략)

◇ 이소규 의원

- 시정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은 다음 의회에서 하기로 하  
고 오늘 회의는 일로 폐회할 것을 동의  
(재청)  
전원 찬성

◇ 의장

- 회의록 서명에 의원을 지명

6. 폐회선언 : 의장

(오후 4시 53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4(4287)년 12월 24일